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82
------------	-----

제출년월일 : 2005. 10. 1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47-13 우림그린아파트 310호 정태환 등 7,338명이 제정 청구한 조례로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완전한 직영급식 및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사하구의 종합계획 수립·실천, 재정지원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안의 목적 및 목표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1) 구청장 및 교육장은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 2) 직영급식의 확대와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3) 완전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1) 구청장 및 교육장은 이 조례의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책을 수립·실천하여야 하고 실천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 예산계획 및 재원마련의 원칙과 기준등이 포함되어야 함
- 2)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

다.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1)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포함한다
- 2) 구청장은 학교급식 경비를 직접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우수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한다
- 3) 지원의 규모 및 내역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1)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를 구청장 및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신청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 2) 구청장은 이를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 제출·부의토록 규정

마.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1)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함
- 2) 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및 기능을 규정

바.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지원대상자의 정산보고 및 구청장과 위원회의 지도·감독 의무를 부과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학교급식법」, 「동법 시행령」

나. 기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9의 규정에 의한 사하구 의견 및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1849(2004.8.5.)호로 시달된 표준조례안 붙임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영유아교육기관의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을 소비촉진함으로써 생산과 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표)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며, 급식의 질적 개선과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2. 직영급식의 확대와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3. 학교급식을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4.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5. 완전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한다.

-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로서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산물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 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 라.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 바. 가목 내지 라목 및 마목의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가공식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3.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제5조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영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5.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된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 (자치단체의 의무) ① 구청장과 교육장은 제1조의 목적 및 제2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구정계획에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산계획 및 재원 마련의 원칙과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및 교육기관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 각호의 보육 시설
5. 기타 구청장과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제6조 (지원방법) ①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지 및 생산자가 명기된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지역 및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 우수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하며, 지원의 규모 및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④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영유아 교육기관 및 초·중학교는 서부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역 및 국내 친환경 우수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 계획
6. 급식 전담 직원 및 학생 대비 급식종사자의 현황 및 노동환경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이를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 제출·부의하여야 한다.

③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2을 넘어야 한다.

1. 부구청장 및 관련 과장 1인
2. 구의회 의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3. 교육청 관련 과장 1인
4. 영양사 및 조리사협회 2인
5. 학부모단체 4인 (초, 중, 고, 영육아 각 1인)
6. 교원단체 1인
7. 교원노조 2인
8. 시민단체 2인
9. 농수축산 생산자 단체 3인
10.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2인

③ 제2항제4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현황 조사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교육기관의 학교급식 시설·설비 개선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4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규모 및 내역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급식 전담 직원 및 학생 대비 급식종사자의 현황 및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사항
6.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 규칙의 개정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지원금이나 현물의 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되, 영유아교육기관 및 초·중학교는 서부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구청장과 위원회는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와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지원금이나 현물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이나 현물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이나 현물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이나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기타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사하구 의견

I. 조례제정 청구경위 및 취지

가. 조례제정 청구경위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47-13 우림그린아파트 310호 정태환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청구하기 위하여
 - '05.4.14 사하구로부터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20세 이상 주민 7,338명의 서명을 받아('05.4.14 ~ 7.13),
 - '05.7.14 사하구에 조례제정을 청구함에 따라

- 사하구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6, 제1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 '05.7.15 조례제정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조례제정 청구인명부(사본)를 구와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의신청 및 유·무효서명 확인을 거쳐('05.7.15~7.21), 유효서명자수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연서 주민수(6,900명)를 충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단서의 청구대상 제외사항도 아니므로
 - '05.8.17 사하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요건 심의를 거쳐 청구조례안을 수리하였음

나. 청구조례안의 제정청구 취지

- 학교급식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을 통하여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 직영급식의 확대와 저소득층 자녀들에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 나아가 완전무상급식을 실시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II. 청구조례안에 대한 분야별 의견

가.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의무 규정의 GATT 및 WTO 위반여부

『조례안의 제1조(목적), 제2조(목표), 제3조(정의), 제6조(지원방법), 제7조(지원신청)에서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규정』

【검토의견】

-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제3조제1항, 제4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 대법원 무효판결 -
- 따라서 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국내보조)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함.

나. 일반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례안의 제4조(자치단체의 의무)에서 '구청장과 교육장은 학교 급식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 실천하여야 한다'고 규정』

【검토의견】

-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이원화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서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112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집행기관으로 “시·도교육감(제20조)”을 두고 “교육비특별회계(제40조)”를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에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여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학교급식업무 :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학교 학생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업무 (학교급식법 제2조 1)
- 또한 동법 제7조제2항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관리 업무를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일반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일반 자치단체장은 식품비 지원과 이와 관련한 예산의 적정집행여부 확인·감사 등을 가능하다고 판단됨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

다. 학교급식관련비용을 포괄적으로 일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례안 제2조(목표) 및 제4조(자치단체의 의무)에서 '완전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 및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

【 검토의견】

- 학교급식관련비용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함 (학교급식법 제8조)
- 급식 경비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를 일컫는 것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4), 일반자치단체는 그중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
- 따라서 포괄적으로 일반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음

라. 학교급식지원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학교급식지원위원회설치)2항 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에서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1/2을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6.교원단체1인, 7.교원노조2인, 8.시민단체2인, 10.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본부2인’ 등으로 규정』

【검토의견】

- 「6.교원단체와 7.교원노조」, 「8.시민단체와 10.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본부」는 중복되는 단체로 판단되므로 정부표준조례안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원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학교급식지원대상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례안 제5조(지원대상)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 각호의 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검토의견】

- 학교급식법 제4조에 급식대상을 초·중·고등학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법에서 정한 급식대상을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바. 위원회에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부여할수 있는지 여부

『조례안 제9조(위원회의기능) 7에서 운영규칙의 개정 권한 부여하고 있으며 제11조(시행규칙) 규칙 제정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6조(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사무로 판단됨

사. 조례가 제정될 경우 재정부담 문제

- 우리구 관내 학교현황 ▷ 9월말 현재

(단위:개소,명)

합 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285	67,947	187	6,652	44	3,772	26	28,930	15	15,182	13	13,411

- 1일 학생 1인당 500원 지원할 경우 : 3천4백만원 소요

▷ 년간 200일 지원할 경우 : 68억 소요

- 위와 같은 규모의 재정부담은 불가함

아. 기타 조례안 제3조(정의), 제6조(지원방법), 제7조(지원신청) 제11조 (지도·감독) 등도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수정 필요

II. 청구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

-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급식지원관련 향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청구조례안의 분야별로 일부 쟁점(위법성)이 예상되는 사항과 지나친 재정부담을 주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별첨 : 표준조례안

00시(군·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표준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 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군·구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구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군·구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0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시·군·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및 관련 실국장
2. 시·군·구 교육청 관련국장
3. 시·군·구 의회의원
4. 학부모 단체
5. 교원 단체
6. 영양사 단체
7. 농민단체

8. 시민단체

9.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시·군·구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